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89
------	-----

2011. 6. 28.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1년 6월 15일

나. 제안자 : 김연선 의원 외 17명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16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1년 6월 28일)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과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운영 측면에서 서비스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시됨.
- 이에,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서울특별시장은 시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노수)

가. 개정안의 경과 및 발의배경

-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 제227회 정례회(김연선 의원 대표발의) 본회의를 통과(2010.12.2)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재의요구안을 제출(2010.12.21)하여 현재 계류되어 있음. 위의 내용과는 별도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개정안은 서울시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¹⁾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려는 것임.
- 현대행정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기술이 풍부한 민간에 맡겨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음²⁾.
- 현재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총 454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시의회에 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실정임

< 민간위탁사무 유형별 구분 >

구 분	합계	시설	사무	수익형	단순행정관리
건 수	454건	230건	138건	76건	10건
예 산 (백만원)	1,603,526	643,048	952,510	3,253	4,715

- 1)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2) 행정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첫째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둘째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셋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음.

- 또한, 8개의 광역의회에서³⁾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해당 의회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승인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 견제 기능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의 대상과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차원의 적절한 견제와 통제,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단체장의 결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조례라 판단됨.

나. 민간위탁 결정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시의회의 동의(안 제4조제2항)

-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의 결정에 앞서 조례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수탁자에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사항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사례를 보면(2010추11),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음.
- 따라서 민간위탁 결정의 정당성 및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견제의 범위 내에 해당되며, 이를 단체장의 고유권한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 동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음. 다만, 향후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민간위탁(93건)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관리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한편, 부칙에서 시행일을 조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한 것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등 동 조례 시행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주는 것임.

3)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전라북도, 경상남도도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의회의견 청취를 듣고 있음. 【별첨 : 참고자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p> <p>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p>
<p>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p> <p>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p> <p>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p> <p>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p> <p>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p>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p>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p> <p>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p> <p>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p> <p>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p>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현 행	개정안
<p>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9. 생략</p>	<p>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9.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4. 질의 및 답변요지

○ 동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집행부에서 다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인가?

- 기획조정실장 답변 :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항임 .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

9. 소수의견 요지 :

집행부에서 다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은 동의할 수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p> <p>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p>
<p>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p> <p>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p> <p>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p> <p>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p> <p>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p>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p> <p>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p> <p>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p> <p>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p> <p>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p>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현 행	개정안
<p>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9. 생략</p>	<p>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9.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